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제2025-1371-SO-5857호

##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정 관 개 정 안 (v2)

|         |                             |
|---------|-----------------------------|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 제 출 자   |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이사장 장한형   |
| 조합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48, 3층 3381호 |
| 인 가 번 호 | 제2025-1371-SO-5857호         |
| 개정 의결일  | 2026년 월 일 (제 회 총회)          |
| 제 출 일   | 2026년 월 일                   |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 제 1 부 총 회 안 건

### 안건번호 제 호

### 정관 변경의 건

**□ 제안 배경**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시행, 이사회의 정보통신수단 활용 운영, 임원보수 결정 절차의 명확화, 대리인 1인 한도 규정의 전자투표 시 적용 예외, 하위 자치규범(운영규약·총회운영규약·통합운영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및 디지털 기반 협동조합 운영 현실화를 위하여 정관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정 범위**

이번 개정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회의 운영, 대리인 1인 한도 예외, 규약·규정 의결 주체 명시, 임원보수 총회 승인 명문화 등 7개 항목에 관한 정관 조항의 신설 및 수정으로 구성됩니다. 조합의 설립 목적, 사업 범위, 조합원 자격, 재정 구조 등 정관의 본질적 내용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 의결 방법**

정관 변경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정관 제35조에 따라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특별의결).

**□ 개정 조항 요약 (7개 항목)**

| 번호 | 개정 조항          | 개정 내용                                 |
|----|----------------|---------------------------------------|
| ①  | 제9조 (규약 또는 규정) | 규약=총회, 규정=이사회 의결 주체 명시 (제2항 신설)       |
| ②  | 제28조 (대의원총회)   | 대의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참여 근거 추가 (제⑩⑪항 신설) |

|   |                  |                                      |
|---|------------------|--------------------------------------|
| ③ | 제28조의2 신설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전자총회) 조항 신설            |
| ④ | 제37조 (대리인이 될 자격) |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 시 1인 대리 한도 예외 단서 추가    |
| ⑤ | 제39조 (총회의 운영규약)  | 전자총회 세부사항의 총회운영규약 위임 범위 명시           |
| ⑥ | 제41조 (이사회)       | 화상회의·전자결의(서면결의) 근거 신설 (제⑦⑧항 신설)      |
| ⑦ | 제56조 (임원의 보수 등)  | 상임임원 보수 총회 승인, 비상근임원 실비 이사회 결정 구분 명시 |

□ 의결 주문 (안)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정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 부 개 정 이 유 및 조 문 비 교 표

표시 범례: [신설] = 새로 추가된 조항(붉은색) / [개정] = 기존 조항 수정(파란색) / [추가] = 기존 조항에 문구 추가(초록색)

### 개정 ① 제9조(규약 또는 규정) — 의결 주체 명시

#### □ 개정 이유

현행 제9조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규약과 규정 각각의 의결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규약의 총회 의결을, 제42조는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관에서 이를 확인·명시하지 않아 운영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규약=총회, 규정=이사회로 정관에 명시하여 자치규범 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 □ 조문 비교표

|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 제9조 (규약 또는 규정) |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br>② 규약은 총회의 의결로 제정·개폐하고,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개폐한다.<br><b>[신설]</b> |

근거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2호(규약의 총회 의결),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 개정 ② 제28조(대의원총회) — 전자적 방법 참여 근거 추가

### □ 개정 이유

현행 제28조 제8항(현행 마지막 항)은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8조의2(전자총회) 신설 후 준용을 통해 대의원의 전자 참여가 가능하나, 대의원의 경우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없다는 특례(제28조 제5항)가 있어 전자적 직접 참여를 별도로 명시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 □ 조문 비교표

|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 제28조 제⑩항 제⑪항 | (해당 조항 없음) 현행 마지막 항(⑨):<br>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⑩ 대의원은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은 현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b>[신설]</b><br>⑪ 제10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참여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제28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b>[신설]</b> |

근거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 개정 ③ 제28조의2 신설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 □ 개정 이유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의2(2020.12.29. 신설, 2021.6.30. 시행)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합의 총회운영규약에 이미 전자총회 규정(제3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상위 규범인 정관에 근거 조항이 없어 해당 규약의 법적 효력이 불완전합니다. 정관에 전자총회 허용 조항을 신설하여 하위 규범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전국 분

산 지부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 조문 비교표

|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 제28조의2 [전문<br>신설] | (해당 조문 없음) | 제2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b>[신설]</b><br>①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총회를 전자적 방법(화상회의 시스템 포함)으로 개최하거나,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b>[신설]</b><br>②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한 조합원은 현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b>[신설]</b><br>③ 전자총회의 운영 방법, 본인 확인 절차, 의결권 행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b>[신설]</b> |

근거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의2 (2020.12.29. 신설 / 2021.6.30. 시행)

**개정 ④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 전자투표 시 1인 한도 예외 단서**

□ 개정 이유

현행 제37조는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를 1인에 한정합니다. 이 규정은 현장 총회에서의 대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예컨대 사인오케이(SignOK) 등을 통한 위임 의결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이 1인 한도가 전자적 참여의 효용을 사실상 무력화시킵니다.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리 남용의 우려가 없으므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1인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추가합니다.

□ 조문 비교표

|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 제37조 (대리인이 될 자격) |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br><br>다만, 제28조의2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1인 한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추가]</b> |

근거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25조 (의결권 및 선거권) / 제28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정 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 전자총회 위임 범위 명시**

□ 개정 이유

현행 제39조의 위임 조항이 전자총회 운영, 사전 전자투표, 기술적 장애 처리 등 디지털 기반 운영 세부 사항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적으로 위임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 조문 비교표

|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 제39조 (총회의 운영규약) |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b>[추가]</b> |

근거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의2, 제30조 (총회의 운영)

## 개정 ⑥ 제41조(이사회) — 화상회의·서면결의 근거 신설

### □ 개정 이유

현행 정관은 이사회의 소집 절차(제41조 제4항), 개회 및 의결 정족수(제43조), 의사록 작성(제44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상회의·전화회의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이사회 개최 및 서면결의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이사진이 정보통신수단(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관의 근거 미비로 해당 의결의 법적 효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이사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개최 및 서면결의를 정관에 명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의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 □ 조문 비교표

|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 제41조 제⑦항 제⑧항 <b>[신설]</b> | (해당 조항 없음) 현행 마지막 항(⑥): 제⑤항과 제⑥항의 경우 이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행한다. | ⑦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b>[신설]</b><br>⑧ 이사회는 구성원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다(서면결의). 이 경우 이사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b>[신설]</b> |

참고: 「상법」 제391조의2(이사회의 서면결의), 「협동조합기본법」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 개정 ⑦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 총회 승인 절차 및 비상근임원 처우 명시

### □ 개정 이유

현행 제56조는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 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여, 이사회 의결 규정으로 충분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임원보수 세칙은 이사회가 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운영규약 제16조 제1항에도 총회 승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 규범인 정관에 총회 승인 근거를 직접 명시하여 임원 보수 결정 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아울러 비상근임원의 여비·수당과 상임임원의 보수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 조문 비교표

|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 제56조 (임원의 보수 등) |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 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① 상임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b>[개정]</b><br>② 비상근임원의 여비,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b>[개정]</b><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임원보수 세칙으로 정한다. <b>[신설]</b> |

근거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이사회 의결사항), 규약·규정집 임원보수 규정 예시

---

### 제 3 부 주 무 관 청 제 출 용

---

## 사 회 적 협 동 조 합 정 관 변 경 인 가 신 청

---

수 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 조: 사회적경제과장

제 목: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정관 변경 인가 신청

---

1. 관련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2항(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2. 우리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허용 조항 신설, 전자투표 시 대리인 1인 한도 예외 추가, 이사회의 화상회의 및 서면결의 근거 마련, 규약·규정의 의결 주체 명시, 임원보수 총회 승인 절차 명문화 등을 위하여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에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갖추어 정관 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이 사 장 장 한 형 (직인)

[ 붙임 서류 ]

| 번호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 1부 |               |
| 2  | 총회 의사록 사본                 | 1부 | 공증 또는 원본 대조필  |
| 3  | 정관 변경 전후 대조표              | 1부 | 본 문서 제2부 해당   |
| 4  | 개정 정관 전문                  | 2부 | 개정 조항 밑줄 표시   |
| 5  | 조합원 명부                    | 1부 | 총회 출석 조합원 확인용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처리기간: 30일 (보완 요청 시 중단)*

## 제 4 부 개 정 정 관 — 변 경 조 항 전 문

이 부분은 개정 대상 7개 조항만을 발췌한 것으로, 변경 없는 조항은 "현행과 같다"로 처리합니다. 정관 전문(全文)은 별도 제출합니다.

### 제9조 (규약 또는 규정)

- ①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 ② 규약은 총회의 의결로 제정·개폐하고,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개폐한다. **[신설]**

### 제28조 (대의원총회) — 항 추가

제28조 제1항부터 제9항(현행 마지막 항)까지는 현행과 같음.

- ⑩ 대의원은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은 현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 ⑪ 제10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참여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제28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 제28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신설]

- ①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총회를 전자적 방법(화상회의의 시스템 포함)으로 개최하거나,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 ②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한 조합원은 현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 ③ 전자총회의 운영 방법, 본인 확인 절차, 의결권 행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 제37조 (대리인이 될 자격) — 단서 추가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

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현행과 같음]

다만, 제28조의2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1인 한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가]

### 제39조 (총회의 운영규약) — 문구 추가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추가]

### 제41조 (이사회) — 항 추가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현행 마지막 항)까지는 현행과 같음.

- ⑦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 ⑧ 이사회는 구성원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다(서면결의). 이 경우 이사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 제56조 (임원의 보수 등)

- ① 상임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 ② 비상근임원의 여비,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임원보수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인 조합 설립일(2025년 10월 30일)부터 이 정관 시행일 전까지 전자적 방법(화상회의, 전자문서 등)으로 개최된 이사회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자총회 시행 시기)**

제28조의2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는 이 정관 시행 후 이사회가 전자총회 운영 지침을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6년    월    일

위 정관 개정이 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이 사 장 장 한 형 (직인)

## 제 5 부 개 정 정 관 전 문

###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정 관 전 문

표시 범례: **[신설]** = 새로 추가된 조항 / **[개정]** = 기존 조항 수정 / **[추가]** = 기존 조항에 문  
구 추가 ※ 적색 조문 =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라 한다.

### 제 2 조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인 고령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한다.

1. 시니어기자 양성을 위한 전문 미디어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역량 강화 지원
2. 지역시니어신문 운영을 통한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 및 경제활동 확대
3.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니어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 제 3 조 (조합의 책무)

-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 4 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지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登記하여야 한다.

#### 제 5 조 (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 제 6 조 (광고방법)

-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 홈페이지(seniorsinmun.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7 조 (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 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 제 8 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9 조 (규약 또는 규정)

- ①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규약은 총회의 의결로 제정·개폐하고,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개폐한다.

*[신설]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2호(규약의 총회 의결),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라 규약과 규정의 의결 주체를 정관에 명시*

## 제 2 장 조합원

### 제 10 조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사업 등에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함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자
  -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사업 등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
  -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제 11 조 (조합원의 가입)

-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제 12 조 (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 14 조 (탈퇴)

-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제 15 조 (제명)

-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6 조 (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제 17 조 (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에는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

## 제 3 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 제 18 조 (출자)

-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출자금은 가입신청 후 14일 이내에 납입한다.
-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 제 19 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 연월일
  -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 연월일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 20 조 (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 (출자금액의 감소의결)**

(정관 원문과 같다)

**제 22 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정관 원문과 같다)

**제 23 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정관 원문과 같다)

**제 24 조 (과태금)**

(정관 원문과 같다)

**제 25 조 (법정적립금)**

(정관 원문과 같다)

**제 26 조 (임의적립금)**

(정관 원문과 같다)

---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 27 조 (총회)**

-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 28 조 (대의원총회)

-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대의원총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⑩ 대의원은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은 현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⑪ 제10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참여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제28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제@@@항 — 대의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참여 근거. 정관 제28조의2 신설과 연동*

### 제 28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 ①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총회를 전자적 방법(화상회의 시스템 포함)으로 개최하거나,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한 조합원은 현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전자총회의 운영 방법, 본인 확인 절차, 의결권 행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전문 신설 —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의2(2020.12.29. 신설) 위임에 따른 정관 근거 조항. 전자총회 허용 및 총회운영규약 위임*

## 제 29 조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 제 30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 31 조 (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감사가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사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감사가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 제 32 조 (총회의 소집절차)

-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 32의 2 조 (조합원제안권)**

-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제 33 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정관의 변경
- 3.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6. 결산보고서의 승인
- 7. 감사보고서의 승인
- 8.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 9. 조합원의 제명
-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4 조 (총회의 의사)**

-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하여 총회가 불성립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 35 조 (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 36 조 (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7 조 (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다만, 제28조의2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1인 한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1인 대리 한도 예외 단서 신설. 사인오케이 등 전자위임 방식 활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제 38 조 (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 39 조 (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추가] 전자총회 운영 세부사항의 총회운영규약 위임 범위를 명시하여 해석 논란 방지*

### 제 40 조 (총회의 회기연장)

-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41 조 (이사회)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행한다.
- ⑦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⑧ 이사회는 구성원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다(서면결의). 이 경우 이사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제⑦항 — 이사회 화상회의 근거. 제⑧항 — 서면결의 근거. 설립 초기부터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운영되어 온 이사회 의결의 법적 토대 마련*

### 제 42 조 (이사회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3 조 (이사회 의사)**

-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 **제 44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 **제 5 장 임원과 직원**

### **제 45 조 (임원의 정수)**

(정관 원문과 같다)

### **제 46 조 (임원의 선임)**

(정관 원문과 같다)

### **제 47 조 (선거운동의 제한)**

(정관 원문과 같다)

### **제 48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정관 원문과 같다)

**제 49 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

(정관 원문과 같다)

**제 50 조 (임원의 임기)**

(정관 원문과 같다)

**제 51 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정관 원문과 같다)

**제 5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정관 원문과 같다)

**제 52의 2 조 (이사의 경업금지)**

(정관 원문과 같다)

**제 52의 3 조 (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정관 원문과 같다)

**제 53 조 (감사의 직무)**

(정관 원문과 같다)

**제 54 조 (감사의 대표권)**

(정관 원문과 같다)

**제 55 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정관 원문과 같다)

**제 56 조 (임원의 보수 등)**

- ① 상임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비상근임원의 여비,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임원보수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① 상임임원 보수 → 이사회안 + 총회 승인으로 확정 (기존 "규정으로 정한다"에서 절차 명  
확화) ② 비상근임원 여비·회의 수당 → 이사회 의결 ③ 세부사항 → 임원보수 세칙 위임 [신설]*

**제 57 조 (임원의 해임)**

(정관 원문과 같다)

**제 58 조 (운영의 공개)**

(정관 원문과 같다)

**제 58의 2 조 (기부금의 공개)**

(정관 원문과 같다)

**제 59 조 (직원의 임면 등)**

(정관 원문과 같다)

---

**제 6 장 사업과 집행**

**제 60 조 (사업의 종류)**

(정관 원문과 같다)

**제 61 조 (사업의 이용)**

(정관 원문과 같다)

**제 62 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정관 원문과 같다)

---

**제 7 장 회 계**

**제 63 조 (회계연도)**

(정관 원문과 같다)

**제 64 조 (회계)**

(정관 원문과 같다)

**제 65 조 (특별회계의 설치)**

(정관 원문과 같다)

**제 66 조 (결산 등)**

(정관 원문과 같다)

**제 67 조 (손실금의 보전)**

(정관 원문과 같다)

---

**제 8 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 68 조 (합병 및 분할)**

(정관 원문과 같다)

**제 69 조 (해산)**

(정관 원문과 같다)

**제 70 조 (청산인)**

(정관 원문과 같다)

**제 71 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정관 원문과 같다)

---

**부 칙**

**제 1 (부칙)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부칙)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인 조합 설립일(2025년 10월 30일)부터 이 정관 시행일 전까지 전자적 방법(화상회의, 전자문서 등)으로 개최된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3 (부칙) 조 (전자총회 시행 시기)**

제28조의2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는 이 정관 시행 후 이사회가 전자총회 운영 지침을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6년 월 일**

위 정관 개정이 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이 사 장 장 한 형 (직인)**

※ "(정관 원문과 같다)" 표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변경되지 않은 조항입니다. 제출용 정관 전문 작성 시 해당 조항의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